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심사 보고서

2016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2016년 8월 23일,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24일 원안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2016.9.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 가. 상정 이유
상위법령 불일치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함
- 나. 주요내용
 - 1) 기금재원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2조)
 - 가)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을 '기금 대역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변경
 - 나)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 다)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 신설
- 2)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4조)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5조 등)
- 4) 그 밖의 용어 순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취지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은 기금의 재원을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p>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금 2. 자활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 3. 구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4.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p>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 안 제3조의 용어 변경(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다만, 각 호 기금의 용도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현행)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지원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5.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p>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안 제4조에서는 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해 온 바, 그 명칭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5년 11월 6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조례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심의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심의) ----- -----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 -----.	<u>제4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u>
1. 기금의 조성, 운용 계획 및 결산	1. 현행과 같음	<u>1. 현행과 같음.</u>
2.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2. 현행과 같음	<u>2. 현행과 같음.</u>
3. 기금의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u>3. 현행과 같음.</u>
<신설>		<u>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u>

- 안 제11조(준용)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상위법령이므로 당연히 따르고 적용해야 할 대상이지 준용할 대상이 아님.

따라서 안 제11조(준용)는 다음의 **수정안**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법체처 의견 참조1)**

-
- 1) **법제처**가 영천시의 질의에 대해 답변(2014.10.15.)하는 과정에서 “준용”에 대해 설명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이를 ‘준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중간 생략”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을 위반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해서 입법되고 그 효력이 국가 전체에 미치므로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이도 그 효력은 국가 내의 모든 행위에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논리로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준용’은 그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경우에는 준용을 위해서는 성질이 유사한 동일한 지위를 지닌 다른 조례의 특정 조문을 명시하여 준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수정안) 제11조의 조 제목을 변경하는 방법: “준용” → “준용 등”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1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참고자료 : 종로구 자활기금 현황

□ 관련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자활기금의 적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 (자활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제742호)

□ 기금 개요

- 설치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
- 설치연도 : 2005. 9. 30.설치 (2010. 12. 31. 조례 개정)
- 목 표 액 : 5억원 (~ 2019년)
- 조성재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자활수익금
- 지원대상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등
- 지원기준 : 연리 1% (5년 거치, 5년 상환)
- 사업내용 :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 및 사업자금 대출
- 지원범위 결정 : 종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기금 조성현황

○ 연도별 자활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기준:2016.7.20,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②	잔액 ①-②
	계 ①	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2010년까지	192,267	150,000		23,253	19,014		192,267
2011년도	15,341		42	6,892	8,407	10,000	5,341
2012년도	21,468			7,517	13,951	49,705	△28,237
2013년도	35,189		10,100	6,673	18,416		35,189
2014년도	85,261			6,000	79,261	0	85,261
2015년도	45,995			6,968	39,027		45,995
계	395,521	150,000	10,142	57,303	178,076	59,705	335,816

○ 2016년 자활기금 조성계획

(단위 : 천원)

2015년도 말 현재액	2016년도 운용계획			2016년도까지의 예치분 만기금액
	수입	지출	증감	
335,816	50,671	70,000	△ 13,329	322,487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5.4.2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7(기금의 지도·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4.20.>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4.20.>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9.8.]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급여기준과), 044-202-3144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 윤종복 위원 의 수정동의안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

수정 동의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생 략)	제3조(기금의 용도)(현행 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현행 과 같음)
1. <u>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대여</u>	1. <u>자활기업</u> ----- -----	1.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u> 」 제26조의4에 <u>따른 용도</u>
2. <u>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 업운영에 필요한 점포지원</u>	2. <u>자활기업</u> ----- -----	2. <u>자활기업, 자활근로사 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 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임대지원</u>
3. <u>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u>	3. <u>자활기업이</u> ----- -----	3. 「 <u>국민기초생활 보장 법</u> 」(이하 “ <u>법</u> ”이라 한 다)에 따른 수급자 및 <u>차상위 계층의 자활지 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 청장이 인정하는 사업</u>
4.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 <u>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 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 정하는 사업</u>	4. 「 <u>국민기초생활 보 장법</u> 」 ----- ----- <u>차상 위계층</u> ----- -----	<삭제>
5. <u>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 층의 자활사업자금 채무 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u>	5. <u>자활기업</u> ----- -----	<삭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6. <u>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u>	6. (현행과 같음)	<삭제>
<p><u>제4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의한다.</u></p> <p>1. ~ 3. (생략)</p> <p><신설></p> <p><u>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u></p>	<p><u>제4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u></p>	<p><u>제4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기금운용성과분석</u></p> <p><u>제11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u></p>